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09 발의연월일: 2020. 12. 3.

발 의 자:이개호・위성곤・유동수

윤재갑 · 송갑석 · 서삼석

홍성국 · 김병기 · 인재근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 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 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4항제9호 중 "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"을 "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"으로 한다.

제2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(이 하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신용카드등으 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 을 납부일로 본다.
-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,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~ ③	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	4
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	
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	
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	
수 있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	9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
<u>규제특례법」</u> 에 따른 특화사	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
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	법
10.・11. (생 략)	10.・11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3조(대부료 등) ① ~ ⑦ (생	제23조(대부료 등) ① ~ ⑦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
	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
	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
	카드 등(이하 "신용카드등"이라
	한다)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	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

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
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
<u>본다.</u>
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
정,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<u>정한다.</u>